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24-62
----------	-------

제출년월일: 2024.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관내 로봇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공공 수요기반의 민·관협력 시민체감형 새로운 로봇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레퍼런스¹⁾ 창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구의 미래전략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형 로봇 서비스 발굴·확산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주민편의 서비스·업무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최종 선정(24. 7월 예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²⁾과 공동 연구개발기관³⁾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 지침」, 협약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토대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24. 8월)임.

1) 레퍼런스: 일반적으로 “참조” 또는 “참고자료”를 의미하며, 기술 분야 레퍼런스는 일반적으로 논문, 기술보고서, 특허, 표준, 전문서적 등이 활용됨.
'레퍼런스 창출'은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해하면서 신뢰성과 신뢰도를 높여,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주관연구개발기관:(주)제이엠로보틱스 (관내 소재 기업)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UBTECH ROBOTICS사의 글로벌 PP(Product Planning) 파트너 및 국내 OEM & ODM 개발과 유통에 대한 독점 파트너사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서비스 디자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보틱스 지능 개발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 기업

3) 공동연구개발기관:① (수요처) 마포구청, ②(산產:기업) ㈜마인드로

㈜ 마인드로: 콘텐츠 서비스 사업/로봇 관련 교육/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학술연구 용역업/경영 컨설팅업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제 다수 참여, 돌봄 로봇 실증 사업 다수 추진(서울시, 순천시, 양주시 등)

나.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업무제휴 협약의 체결방법) 제②항에 따라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체결할 업무협약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 협약의 체결방법)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 개요

- 주 관: 서울시 경제정책과 [서울경제진흥원(SBA) 위탁]
- 공 모 명: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나. 공모 내용

공모사업 개요

✓ 자치구·공공기관 소관 시설에서 제공되는 로봇 서비스 개발, 운영

- 지원대상: [공동] 자치구 **수요처** + 산(기업) [주관] 市 소재 로봇 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내용: 스마트로봇존 조성 및 新로봇서비스 개발 지원 등
- 수행기간: **2024 ~ 2025년 (총 2년)**

공모·선정
(2024년)



1차년도 ('24년)

서비스 기획 및 설계
• 서비스 구역 설정, 현장
시나리오, 기획, 서비스 기술 개발



2차년도 ('25년)

시범운영 및 시민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최적화, 현장설치 및
시민 대상 로봇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최대 24개월**

* 공모사업 최종 선정: '24.7월 예정 // 협약체결:'24. 8월 예정

- 1차년도: 협약일 ~ 최대 12개월
- 2차년도: 재협약일 ~ 최대 12개월

○ 사업규모

연구개발비 (과제별)	시지원 연구개발비	컨소시엄 부담금(총 3억원)	
		수요처(자치구, 공공기관)	로봇 기업 등
최대 6억원	최대 3억원	1억원 이상(필수)	1.5억원 이상(필수)

다. 공모사업 추진 경위

- 2024. 3. 5. ~ 3. 15.: 마포구 로봇서비스 개발 유형 수요조사 및 검토
- 2024. 3. 8. ~ 4. 2.: 관내 로봇·AI 기업 탐색 및 탐방 실시[구(부)청장 이하 국장급 간부 등]
- 2024. 4. 12.: 공모사업 사업실행계획 수립 협의 차 기업방문 (예산정책과장 외 3명)
- 2024. 4. 15.: 서울경제진흥원(SBA) 책임관 예산정책과 방문·협의
- 2024. 4. 15.: 효도밥상 반찬공장, 효도숙식경로당 시설 탐방
- 2024. 4. 24.: 공모사업 실행계획 수립 협의 차 마포구 방문 (컨소시엄 기업관계자 2명)
- 2024. 4. 26.: 공모사업 컨소시엄 참여 협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주제이엠로보틱스] ↔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마포구, (산:기업) (주)마인드로)
- 2024. 4. 26.: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라. 세부추진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2024.8월 예정)로부터 24개월(1·2차년도 각 1년)
- 로봇 실증처: 효도숙식경로당, 효도밥상, 늘봄학교, 스테디카페, 베이비시터하우스, 마포구청 청사
- 사업내용: 전생애주기 마포형 지속가능한 로봇 돌봄·복지서비스 구축
 - (1차년도) 돌봄, 복지 구현을 위한 다종로봇 융합 로봇 커스터마이징, 시제품 제작, 서비스 구현
 - (2차년도) 로봇관제시스템을 통해 다수 수요처에 다종 로봇 서비스를 실증하고 최적화, 고도화함
- 기대효과
 - 시민체감형 로봇 서비스 개발 및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약자동행, 교육 및 돌봄, 대시민 서비스 분야 로봇 서비스 개발
 - 사회복지 영역의 비용 절감, 돌봄 부담 저감 및 공백 최소화
 -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복지 성공모델 발굴
 - 유망 서비스 로봇 산업·기술분야 기업 성장 지원
 - 미래 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 및 로봇 서비스 대중화 시대 선도

마.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3~4월)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PMS) 주관연구개발기관 → SBA	서류평가 (5월)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 추천 SBA	발표평가 (6월) 지원규모의 1.3배수 내외 추천 SBA	현장점검 (6월) 현장점검을 통한 기업방문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선정위원회 (7월) 선정과제 심의·의결 SBA	선정결과 안내 (7월)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지표 진단 (7월 말) 대면 진단을 통한 연구정량지표 도출 공인시험인증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8월) 전자협약 체결 및 시지원연구개발비지급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3.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 주요 협약내용(안)

구 분	협약 내용
협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4년 협약일로부터 24개월 (1·2차년도 각 1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1년)
협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제이엠로보틱스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 마포구청 -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 (주)마인드로 ○ 연구개발비의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1.5억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 1.5억원 ○ 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로봇)과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요청으로 개발·커스터마이징된 S/W는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소유로 한다. -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문기관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협약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서울산학협력사업 운영요령과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전문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전문기관(서울경제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주)제이엠로보틱스]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붙임1 참조 (관련 조례 1건)
- 협약서: 붙임2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일몰 사유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현황, 추진내역,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서 표준양식]

2024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마트로봇존) 협약서(안)

- 사업명: 2024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마트로봇존)
- 과제명: 전 생애주기(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지속가능한 마포형 로봇 돌봄 시스템 구축
-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4년 협약일로부터 24개월 (1·2차년도 각 1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2024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1년)
- 협약당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제이엠로보틱스 (대표자) 김동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주)제이엠로보틱스 (직위) 이사 (성명) 이재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 마포구청 (마포구청장) 박강수
공동연구책임자: (소속) 마포구청 (직위) 미래전략사업팀장 (성명) 박재숙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 (주)마인드로 (대표자) 신현미
공동연구책임자: (소속) (주)마인드로 (직위) 대표이사 (성명) 신현미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단위: 원)	시지원연구개발비		300,000,000원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 부담 연구개발비		150,000,000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가)	(다)의 10% 이상
		현물(나)	(다)-(가)
		소 계(다)	150,000,000원
연구개발비 합계			600,000,000원

위 『2024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마트로봇존)』 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2024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스마트로봇존)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과제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전문기관’이라 함은 시장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단, '서울시 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사업자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으로 한다.
-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는 자치구를 말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은 기업을 말한다.
- (5)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6)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 (7)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 (8)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고 한다.)'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 (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토대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적정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중 분기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에 적절히 반영 조치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기간 중 분기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점검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및 사업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수행포기·부도·법정관리·폐업위기·사업승계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및 전담연구원 변동여부(퇴사 등),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연구개발비 카드 사용실적, 부도 및 폐업 여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점검한 경우 사전에 또는 적어도 그와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마포구에게도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 주거나 점검결과를 공유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1)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 전용계좌로 다음의 서울시지원연구개발비(이하 ‘시지원연구개발비’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총 시지원연구개발비 : 일금 삼억 원(300,000,000)
- (2)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 전용계좌로 다음의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 총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계획서 이외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하는 등 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 (4) 연구개발비 각 비목별 사용기준은 『2024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스마트로봇존)』 “협약 체결 시 중요 이행사항(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서 부속 서류)” 편성 기준에 따르며, 다만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과 동시에 실시간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RCMS)에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출자)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출자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자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전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출자내역
[협약일로부터 12개월(1년)]

(단위: 원)

구 분	현금(가)	현물(나)	현금+현물(다)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제이엠로보틱스	(다)의 10% 이상	(다)-(가)	150,000,000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출자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을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게 연구개발기간 중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지침 1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최종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관계규정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제출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마포구, 전문기관은 사업의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 동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전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마포구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하기로 한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정산)

- (1)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요령 제29조,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총괄적인 정산실시의 책임을 지고 전문기관이 지정·운영하는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 시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2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신하여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거나, 연구개발비 정산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 사업과정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 또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문기관에 각종 자료 제출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또는 협약해약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 (5)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 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 (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요령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협약도 함께 해약된다.
- (3) 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35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1)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시설,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예:로봇)과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요청으로 개발·커스터마이징 된 S/W는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2)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3) 본 협약서 제10조의 적용에 있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협약서 따라 서울시, 전문기관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수)

- (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우선하여 준수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3조(기타)

- (1) 협약서(첨부 포함)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 산(産)]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2)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는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4조(해석)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서의 해석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요령과 지침 및 전문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24년 8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주)제이엠로보틱스] 대표이사 김동진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이재은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마포구청) 기관장명 박강수 (직인)

공동연구책임자 박재숙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산:産) [(주)마인드로] 기관장명 신현미 (직인)

공동연구책임자 신현미 (인)